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3. 28 선고 2023가단27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 김윤섭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3,898,7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애초에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반환 채무가 있었다.

* 그런데 그동안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 측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초과하여 총 178,898,738원을 변제받아 갔다.

① 원고의 남편 B은 2010. 10. 25.부터 2013. 8. 1.까지 사이에 D조합에서 합계 6,158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의 남편 E에게 지급하였다.

② B은 밀양시 F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에서 59,910,344원을 배당받았다.

③ 원고는 밀양시 H 외 1필지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I)에서 57,408,394원을 배당받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초과하여 변제받은 93,898,738원(178,898,738원-8,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판단

* 우선, 원고가 제출한 2010. 9. 30.자 임대차연장계약서(갑4호증)에는 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 사이에 마산 J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애초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8,5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 원고 주장의 위 ①항 지급금 6,158만 원에 관련하여, 이 금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 * 원고 주장의 위 ②항 배당금 59,910,344원에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2015. 12. 10.자 배당표(갑3호증)에는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경매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1,050만 원의 근저당권자로서 매각대금 중에서 59,910,344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이로써 피고가 원고 주장처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초과하여 변제받았다고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 원고 주장의 위 ③항 배당금 57,408,394원에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2017. 1. 23.자 배당표(갑3호증)에는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경매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8,500만 원, 이자 2,637,007원 합계 채권 87,637,007원에 관하여 매각대금 중에서 57,408,394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로써 피고가 원고 주장처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초과하여 변제받았다고 할 수 없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초과하여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